

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9. 22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96호로 2025년 9월 8일 김지연 의원 외 6명으로부터
발의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회·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
범분야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, 통·반장 및 직능단체 인력을 생명
지킴이로 적극 양성하여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 강화(제5조)

나. 생명지킴이 제도 내실화(안 제14조~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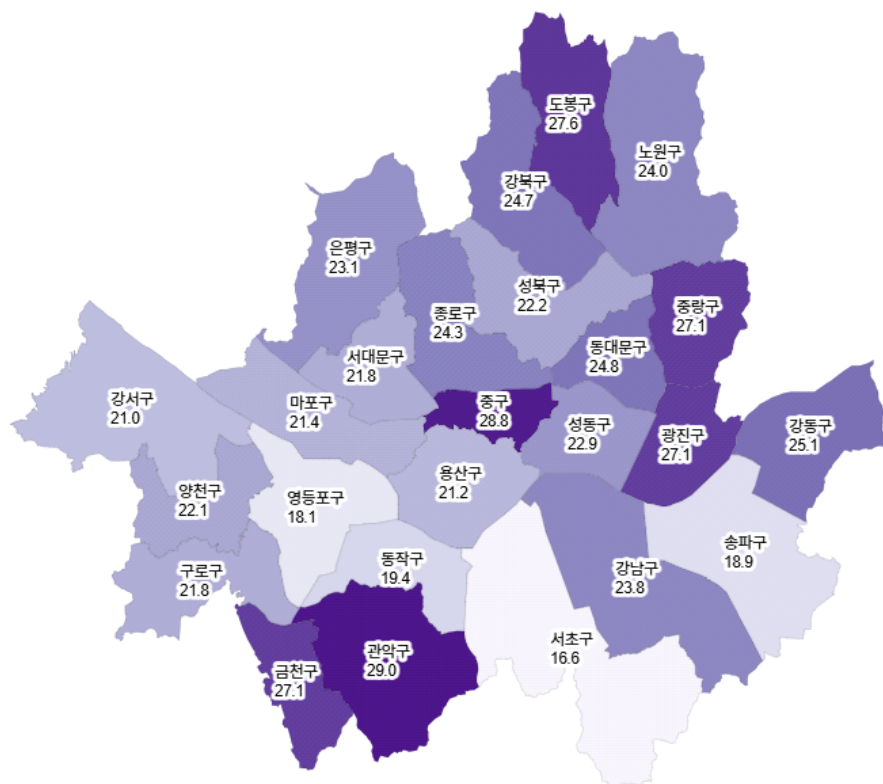
라. 입법예고(2025. 9. 3.~9. 10./5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 일부개정 배경 및 취지

- 서울시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는 전국 27.2명, 서울시 23명이며, 우리 구(區)는 18.1명¹⁾으로 전국, 서울시 자살률 대비 다소 낮지만 여전히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은 존재함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 기반 강화, 통합적 협력 구도 확보, 주민 참여형 생명지킴이 제도의 구체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됨.

[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(2023)]



1) 출처: 서울시 정신건강통계

○ 주요 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자살고위험군, 생명지킴이, 자살유발정보의 정의를 추가함.
-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내용에 생명지킴이 양성·운영 및 지원 계획을 추가하고, 안 제9조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도 생명지킴이가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3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내역을 추가하였으며,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는 생명지킴이 양성 의무와 역할, 지원체계 등을 구체화함.
- 안 제17조에는 자살예방의 날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“생명지킴이”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, 2023년 7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되며 의무화 된 자살예방 교육 내용에도 생명지킴이 교육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생명지킴이 양성 및 지원체계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올해 초까지 우리 구(區)의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총 7명으로 자살예방 캠페인, 자살수단 차단사업, 생명존중길 운영, 준사례 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

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3조2)와 「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3)에 근거하여 실비 및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었음.

【영등포구 생명지킴이 활동 내역】

활동 영역	활동 내용	시 기
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	-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자살예방 활동 관련 회의 및 시상	상, 하반기
자살예방 캠페인	-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홍보 및 캠페인 실시	상, 하반기
자살수단차단사업	- 생명사랑 실천업소(숙박업소 38개소, 고시원 18개소, 번개탄판매소 14개소) 점검 및 업주교육	상, 하반기
생명존중길운영	- 관내 공원(10개소)에 생명존중 글귀가 적힌 표지판(132개) 관리 및 점검(훼손 및 파손 등)	상, 하반기
준사례관리	-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연계 - 1:1 혹은 2:1(고위험군) 자살위험군 매칭하여 준사례관리 실시(전화&방문상담)	월 4회 활동

- 올해 5월 집행기관에서는 통반장, 50+센터 중장년, 또래지킴 동아리 인원 등 70명을 추가 모집하였으며,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생명지킴이 활동가를 적극 양성·운영하고자 통계목간 예산 조정을 통해 이들의 활동경비 및 활동보상금을

2) 제23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3) 제2조(실비 지급)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추가 확보하였기에 이들의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
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.

【영등포구 생명지킴이 활동 내역】

구 분	모집기간	양성 교육 수료자	활동가 신청자
통 반장	25.3.10~25.3.28	163명	28명
50+센터 은퇴중장년	25.3.17~25.4.2	14명	14명
대림중학교	25.3.10~25.3.24	15명	15명
영등포여자고등학교	25.3.10~25.3.24	13명	13명

참 고 자 료

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
제24조의2(관계 기관의 협조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